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안)

의안 번호	101
----------	-----

제안년월일 : 1999. 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1. 제안이유

-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존 의회기의 휘장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고,
-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의 정립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의회기의 규격등에 관한 사항중 기면의 색을 하늘색을에서 하늘색으로로 하고, 중앙에 무궁화 속의 원내 충청북도 휘장을 “議”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 제6조제2항 삭제(안 제6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련법규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충청북도의 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규칙개정에 따른 비교검토(안)

한 헤	개 정 (안)	김 도 의 건	첨 고 사 항
제2조(의회기의 규칙 등) 의회기의 규칙 및 보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회기의 규칙 등)..... 1. 기번은 하늘색을 하고 가로와 세로는 3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2. 기번의 중앙에는 무궁화꽃,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충청북도 청 읍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충청북도 의회"라고 예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모형의 죽정은 것 번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색체는 무궁화 꽃형과 충청북도 끼정은 규색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칙 등) 1.....하늘색으로..... 2..... 3.....	〈비행식〉 · 규칙장 기번의 하늘색은 청색, 전에 신선함을 뜻하고 있음. · 유리도 의회기는 기번이 규칙장 "하늘색을"로되어 있어 이를 "하늘색으로" 표기할 수를 규정하고자 함. · 한세 의회기에 서자인 새 휘장은 표시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도와 시울특별시 등으로 전국적으로 의회에는 의회를 상징하는 "鐵"자를 표시하는 추세임.
제6조(예지세석) ①(생략) ②의원에게 이면에 의회대수와 시설 및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예지세석) ①(한정과 같은) ②(자체)	②③한정 실효성 감소 로 삭제	

충청북도의회 기및의원폐지등에관한규칙개정(안)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제1호중 “하늘색을”을 “하늘색으로”로 하고, 동조2호 중 “충청북도 휘장을”을 “議자로”로 하며, 동조3호중 “충청북도 휘장은” 을 “議자는”으로 한다.

제6조(배지 제식)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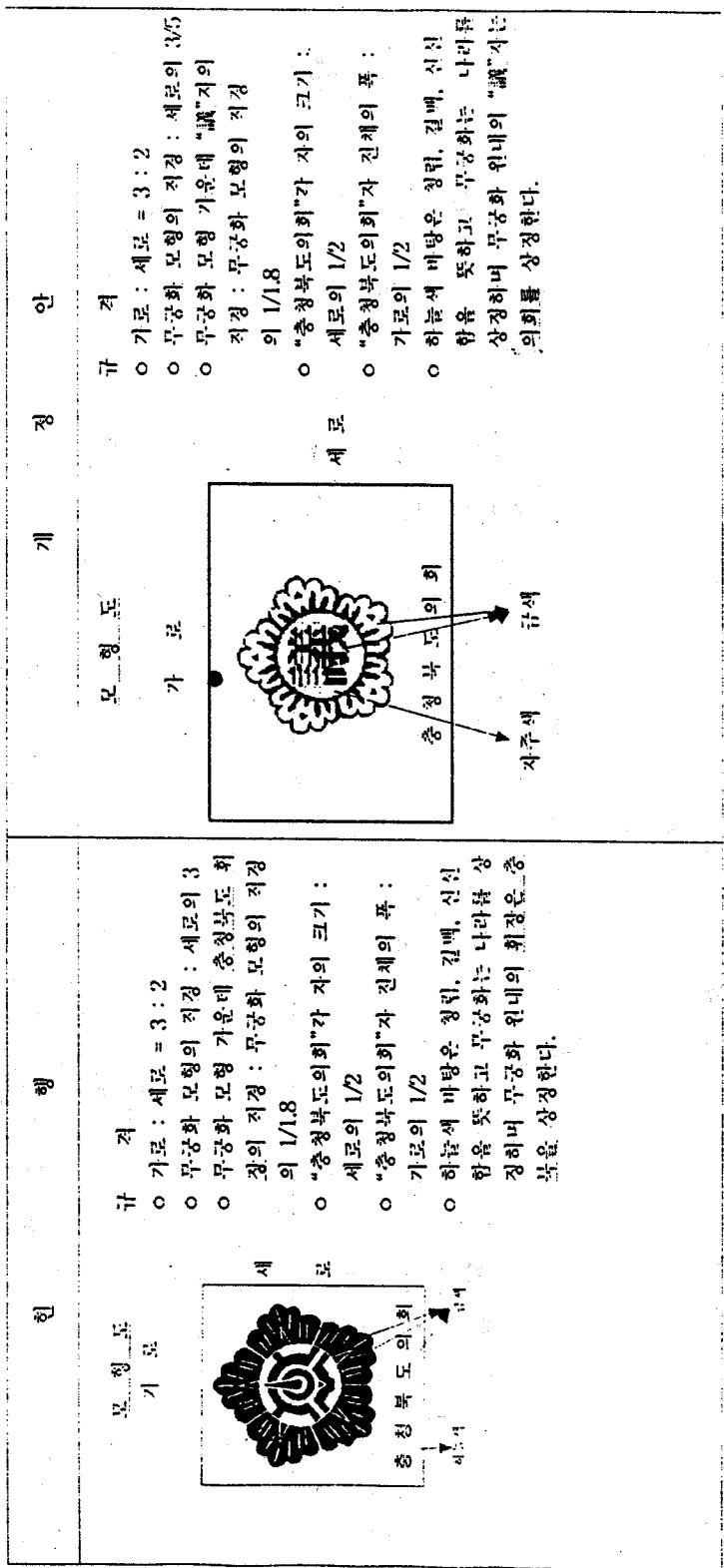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p> <p>1. 기면은 하늘색을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p> <p>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충청북도 회장을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충청북도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p> <p>3. 무궁화 모형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색채는 무궁화 동형과 충청북도 회장은 금색으로 한다.</p> <p>4 - 5 (생략)</p>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p> <p>.....</p> <p>1. <u>하늘색으로</u></p> <p>.....</p> <p>.....</p> <p>2.</p> <p>..... <u>“議”자로 표지</u></p> <p>.....</p> <p>.....</p> <p>3.</p> <p>.....</p> <p>..... <u>“議”자는</u></p> <p>.....</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 (배지 제식) ① (생략) <u>②의원 배지 이면에는 의회 대수와 시·군별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u></p>	<p>제6조(배지 제식) ① (현행과 같음) <u>②(삭제)</u></p>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四五)



제1편 의회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1991. 11. 8
의회규칙 제 4호]

개정 1992. 6. 10 의회규칙 제 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원배지의 모형, 제작,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을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충청북도 휘장을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충청북도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모형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색채는 무궁화 동형과 충청북도 휘장은 금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개양) ① 도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도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제제식) ① 도의회의원 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회대수와 시군별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폐용요령) 의원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착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교부한 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제1편 의회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규칙

부 칙(1992. 6. 10 의회규칙 제0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31 의회규칙 제0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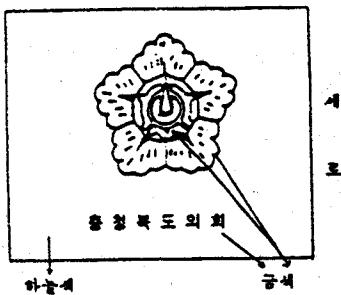
제1편 의회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도

가로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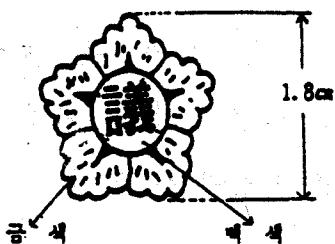
- 가로 : 세로 = 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세로의 3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충청북도 회장의 직경 : 무궁화 모형의 직경의 1/1.8
- "충청북도의회" 각자의 크기 : 세로의 1/12
- "충청북도의회" 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 하늘색 바탕은 청렴, 결백, 신선함을 뜻하고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며 무궁화 원내의 회장은 충복을 상징한다.

(별표 2)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도

규격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cm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직경 : 1.0cm
- "議員" 자의 직경 : 0.8cm(개정 92. 6. 10)
- 재료는 온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